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녹지지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지역을 채굴제한의 예외에서 제외하고, 채굴제한의 예외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함(안 제44조제3항 제1호 단서).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4조제3항제1호 단서 중 “녹지지역의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”을 “녹지지역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 · ② (생략)	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. 다만, 녹지지역의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<u>녹지</u> 지역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----- --.
	2. 「도시공원 및	2.·3. (개정안과 같

	<u>녹지등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26조에</u> <u>따른 도시자연공</u> <u>원구역</u> 3. 「 <u>산지관리법</u> 」 <u>제 25조의 3 제 1 항</u> <u>제1호의 토석채</u> <u>취제한지역인 산</u> <u>지</u>	음)
--	---	----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이언주 · 오세희 · 이원택
안태준 · 허성무 · 황정아
홍기원 · 소병훈 · 황명선
정진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44조에서 “철도·궤도(軌道)·도로·수도·운하·항만·하천·호(湖)·소지(沼地)·관개(灌溉)시설·배수시설·묘우(廟宇)·교회·사찰의 경내지(境內地)·고적지(古蹟地)·건축물,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”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,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, 분진, 지반불안정, 교통사고 위험,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.

또한,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, 학습권 침해, 교통사고 위험,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 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

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「산지관리법」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(안 제44조제3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녹지지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지역을 채굴제한의 예외에서 제외하고, 채굴제한의 예외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함.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. 다만, 녹지지역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 수 있다.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
3.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(채굴계획인가를

받은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자를 포함한다)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.</u>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. 다만, 녹지지역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 수 있다. 2.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.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